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예문화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
■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82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공예문화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안 제4조의2, 제6조제1항제 3호 신설)	2
2. 실태조사의 주기를 매년으로 변경(안 제7조제1항)	10
3.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안 제17조의2 신설)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연욱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3. 11.
3.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의 경우 특정한 주기가 아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주기 및 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예문화산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예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공예문화산업의 통계와 정책 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체계적 축적·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공예문화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안 제4조의2,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개정안 제4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계약 당사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창업 및 제작 등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제2항).

아울러,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6조제1항제3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계약에 관한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현행	개정안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② ~ ⑦ (생략)	<u>다른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u> 1.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 2. 제10조에 따른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3. 제13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 시장 진출 4. 제18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에 따르면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등을 바탕으로 수작업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하며, “공예문화산

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의미함.¹⁾

이러한 공예는 관련 법률²⁾의 규정에 의하면 미술의 한 부분에 포함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한 장르에 속함.

현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그 동안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 등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고시³⁾하고 있음.

<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법률 등 >

법 률	관련 표준계약서
「공연법」 4) 「예술인 복지법」 5)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6)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7)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미술진흥법」 8)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9)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12)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3)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의 형태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됨.

4) 「공연법」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창작·기획·제작·유통 등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려는 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8) 「미술진흥법」

제17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누구라도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

이와 같이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서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 및 각 유형별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공예분야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¹³⁾를 통하여 “전시 및 판매 위탁계약서”, “판매위탁계약서”, “판매계약서”,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대관계약서”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표준계약서의 개발·보급 의무 및 사용시 우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고시만을 통해서는 공예문화산업 분야의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 등의 창작·편집 또는 간행물의 발행·판매 등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제20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3) 「공예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40호)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 및 표준계약서 사용시 현행법에 따른 여러 정책적 지원사항¹⁴⁾의 우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공예문화산업을 한층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문화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

1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공예소재·재료 및 처리기법 등 공예품의 제작·창작에 필요한 공예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 및 지정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 취지에 공감하나, 표준계약서 보급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유사 입법례¹⁵⁾를 참고하여 제도 운용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보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제1항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5)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2. 실태조사의 주기를 매년으로 변경(안 제7조제1항)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7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u>정기적으로</u>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 ----- ----- ----- <u>매년</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7조¹⁶⁾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정(2015. 5. 18.)이후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는 ‘정

16)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적'으로 3년¹⁷⁾을 주기로 2017년, 2020년, 2023년에 실시한 바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는 적시성 등의 측면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어, 공예문화산업실태조사의 주기를 1~2년 주기로 단축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특히, 공예문화산업은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많으므로 휴폐업률이 높은 산업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¹⁸⁾

이에 개정안은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의 주기를 1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공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참고로, 「대중문화예술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¹⁹⁾하고 있음.

17)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8) “공예산업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p.95

1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실태조사의 조사주기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 정비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며, 산업 특성 및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7조는 삭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제1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용역 제공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3.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도록 하고(제1항),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제3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

현 행	개 정 안
	<u>고 인정하는 경우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④ <u>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 제16조²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은 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표준화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2015년 12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예와 관련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음.

20)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 지원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우수공예품의 지정
5. 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공예거리, 지역특화공예품 등의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에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22년부터 공예 분야 데이터 연계·통합 활용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기반 구축 사업이 실시되었고, 공예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예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기능 개선 사업이 2026년 완료되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관리·운영하는 공예정보 통합플랫폼이 공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인 “공예정보 통합플랫폼”의 운영을 통하여 향후 분산된 공예 분야 데이터가 통합·축적되어 전문성 있는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의 개방, 결합 및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 공예문화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개정안은 공예문화산업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참고로, 문화교류, 문화산업,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에서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²¹⁾를 두고 있음.

2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1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내용과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련된 데이터
2.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관련된 데이터
3. 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 결과
4. 해외 권역별 한류산업등의 시장동향 조사 결과
5. 한류산업등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내외 법제도·규제정책 등에 관한 데이터
6.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종사자로부터의 의견수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필요한 데이터

③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지망하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술진흥법」

제23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미술 관련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 관련 정보를 기초로 미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과 개인에게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다양하게 생성되는 공예 관련 정보(공예품, 공예인, 공예시설, 공예전시 등)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와 국민이 공예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통합정보시스템구축은 예산편성과정 등에서 종합적으로 협의·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ICT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향후 각각 시스템 간, 통신망 간, 기관 간의 다양한 협업 및 연계구축이 가능하므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여 행정재량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산재된 공예 정보의 접근성 저하, 표준화 미흡으로 기초 자료 확보 한계, 공예 생태계 전반을 연결하는 공공 데이터 인프라 및 한국 공예의 지속 가능한 아카이빙 필요
- (사업목적) 공예문화산업의 흩어진 정보를 공공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인프라 조성을 통해 공예 생태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산업 성장 동력과 고도화 서비스 도입으로 미래 확장성 확보

□ 주요 내용

- 플랫폼 구축 고도화
 - 사용자 중심 UI/UX 기반 공예정보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기능 고도화
-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아카이빙
 - 공예인·공예품·사업 아카이브 등 핵심 항목 설계 및 중복·비정형 데이터 정비, 메타 데이터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기록 축적
- 검색·탐색 서비스 및 자체 콘텐츠(큐레이션) 서비스
 - 재료, 기법, 분야별 다각도 필터링 및 공예인-공예품 간 연계 검색 구현
 - 작가 소개, 주제별 기획 콘텐츠 등 데이터 기반 이용자 친화 정보 제공
- 운영 관리 체계 수립
 - 품질 관리, 정기 업데이트, 고도화 로드맵 포함 안정적 운영 프로세스 정립

□ 추진경과

사업명	연도	예산	사업추진 내용	비고
공예 디지털 인프라 구축	2022	2억	공예 정보화 기본계획(ISP) 수립	* ISP결과 '23~'27까지 76억 소요
	2023	2억	공예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2024	5.66억	공예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2025	4.96억	공예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2026	4.96억	공예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 '26년 서비스 예정